2021년도 인권경영 성과 보고서

[공개용]

2022. 02.

서울주택도시공사

목 차

Ⅰ. 인권경영 추진개요 ····· 1

1. 추진배경 ····· 1
2. 추진경위 ····· 1
3. 추진체계 ····· 2
4.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 ····· 4

Ⅱ. SH인권센터(인권침해구제기구) 운영 ····· 9

1. 설치목적 ····· 9
2. 추진경위 ····· 9
3. 운영체계 ····· 10
4. 처리절차 ····· 11
5. 처리현황 ····· 11

Ⅲ.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 12

1. 추진목적 ····· 12
2. 평가기간 및 절차 ····· 12
3. 평가범위 및 기준 ····· 13
4. 평가결과 ····· 16

[붙임1]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요약] ···· 19

[붙임2]인권경영이행지침 ····· 39

Ⅰ 인권경영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인권경영의 대내외적 요구와 선도적인 인권경영 추진 필요성 증가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201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 ISO26000, ILO 다국적기업 선언 등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법무부 인권경영 표준안 발표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 확정 (기업과 인권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21.06) ·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침(안) 공개 예정

□ 이해관계자 인권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공급망 전반의 인권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 및 관련 법령 강화 (안전, 환경, 위해요소 등) · 민원 관련 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준 강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내 인권경영 이행 수준 평가 강화

· ‘사회적 책임’ 지표 내 세부지표 윤리경영 세부 평가 내용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는?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절차 제도화의 타당성

2. 추진경위

□ (2018. 11. 21.)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 (2019. 2. 27.) 인권경영이행지침 제정

□ (2019. 3. 20.)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 (2019. 8. 29.) SH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 (2019. 9. ~ 12.) 2019년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0. 2. 1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 (2020. 7. 29.) SH 인권센터 개소

□ (2020. 11. 25.) 서울시 5대 공사·공단 선도적 인권경영 추진 토론회

□ (2020. 10. ~ 12.) 2020년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1. 3. 9.)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중장기 전략 수립

□ (2021. 6. ~ 10.)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중장기 전략 실행계획 수립

□ (2021. 7.)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토크콘서트 개최(주제: 직장 내 혐오표현과 차별)

□ (2021. 9.) 서울주택도시공사 UNGC 10대 원칙 이행보고서(2020년 실적) 제출

□ (2021. 9. ~ 12.) 2021년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1. 11. 18.) 2022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LEAD 기업'으로 선정

□ (2021. 12. 10.)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제2기 기본계획 수립

3. 추진 체계

□ 인권경영담당관 지정 : 미래전략실장(인권경영 이행 총괄,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사회적가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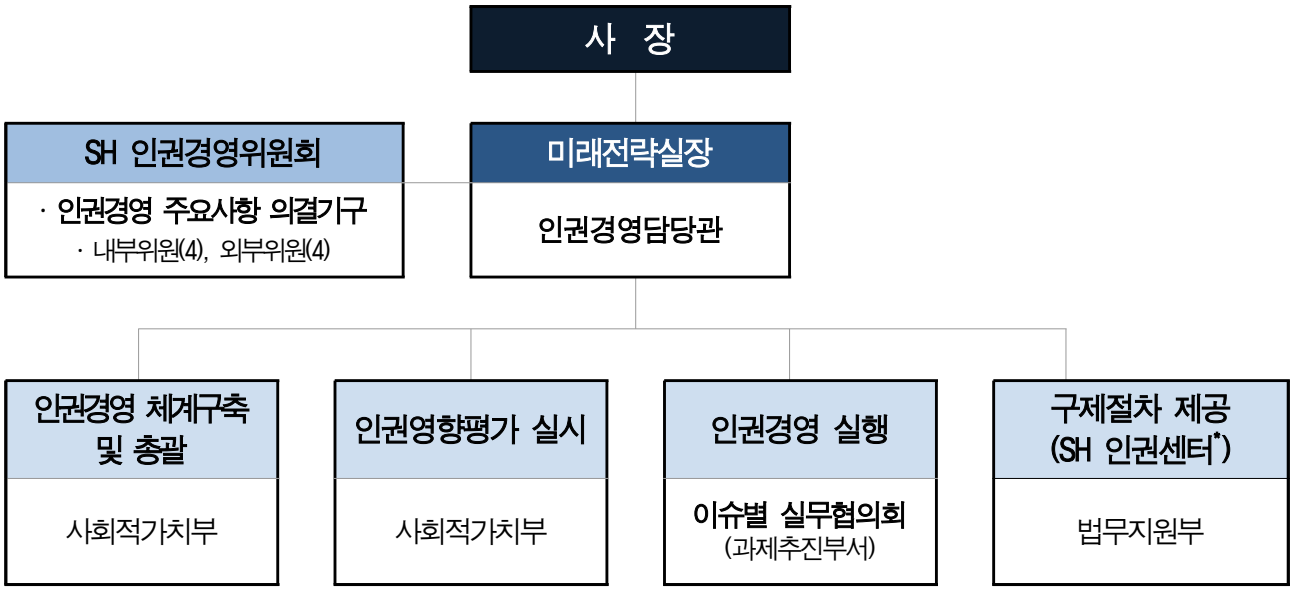

□ 인권경영 실무회의 운영

○ 운영 목적 : 인권경영 과제 추진에 인권경영 유관부서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실행력 강화

○ 운영 방법 : 유관부서에 인권경영 담당자 1인 지정하여 실무회의 구성 (대상자: 부서 업무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4급 이상 직원)

○ 2021년 활동내용(20개 유관부서 참여)

- 인권경영 추진 우수 참여자는 포상하여 독려함

구분	활동내용
인권경영 중장기 전략 실행계획 수립	1) 'ESG와 인권경영의 이해' 교육 참석 (2시간)
	2) '인권 감수성의 시작' 교육 참석(2시간)
	3) 중장기 전략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인터뷰 참여
	4) 중장기 전략 실행계획 작성 및 검토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1) 인권경영 추진 배경 및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 참석(2시간)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3) 인권영향평가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과제 검토
	4) 공사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공유회 참석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운영 목적 : 공사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 의결 사항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구 성

- 외부위원(4인) : 신○위원장, 옥○○위원, 이○○위원, 최○○위원
- 내부위원(4인) : 노동이사(1인), 미래전략실장, 인재개발원장, 인사노무처장

○ 2021년 운영 실적

구분	개최일	심의내용
제1차	6.3.	·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안 · 인권경영 중장기 주요 전략과제 선정
제2차	12.22.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제2기 기본계획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 SH인권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3.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

□ 인권경영 추진방향 설정

1. 공사 인권경영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민기업'** 실현
2. 인권경영의 체계적·전략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 이행체계의 고도화**
3.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Environment) 및 사회(Social) 부분에 중점을 둔** 과제 추진

□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방향성	인권경영 실천으로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민기업 도약		
추진계획	단기 체계화('21~'22년) · 이행체계 고도화 · 인권모니터링·상담고도화 · 공급망 인권경영체계구축	중기 활성화('22~'24년) · 사업 인권리스크 최소화 · 공급망 인권경영 이행 ·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장기 안정화('24~'25년) · 임직원 인권 가치 창출 · 지역사회 인권리스크 최소화 · 미래세대 가치 창출
기대효과	✓ 공공기관 최고 수준 공급망 인권리스크 관리 역량 확보 ✓ 성과지표 관리를 통한 인권경영 가치 창출		

□ 인권경영 중장기 전략(3대 추진방향 / 19대 과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붉은색 글씨 : 주요 전략과제

비전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민기업		
추진방향	1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2 공급망 내 인권 가치 창출	3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경영 실천
전략목표 및 과제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① 인권경영 이행체계 구축 ② 인권경영 추진의 제도적 근거 고도화 ③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프로세스 구축 ④ 인권경영 성과 공시·모니터링	**공급망 인권경영 확산** ⑫ 협력사 행동규범 수립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⑮ 정보 접근성 강화 ⑯ 건축 접근 편의성 제고
	임직원 인권침해 피해 최소화 ⑤ 악성 민원 대응 체계 수립 ⑥ 근로시간 관리 강화 ⑦ 직장 내 성희롱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⑧ 임직원 인권 상담 고도화	**사업 운영 인권 리스크 최소화** ⑬ 협력사 인권 리스크 평가	**지역사회 인권 침해 최소화** ⑰ 사업 인권침해 방지 체계 구축 ⑱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임직원 인권 가치 창출 ⑨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제도 수립 ⑩ 여성 리더십 강화 ⑪ 인권경영 역량 강화	**공급망 인권경영 이행 도모** ⑭ 협력사 인권경영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 ⑲ 사업운영과정에서의 지역주민 환경권 보호
영향범위	임직원	협력사	시민·입주민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제2기 기본계획 수립

○ 인권경영 제2기 기본계획 추진 방향

-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계획을 추가하여 이해관계자의 인권경영 지원 강화
- 인권경영 중장기 전략 실행과제의 이행 및 점검을 통한 전사적인 인권경영 실행 강화
- 인권경영지수를 개발하여 인권경영의 정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관리역량 확보

○ 인권경영 제2기 기본계획 추진 개요

추진 계획	주요 내용
1.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내부조직체계 ·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제도 고도화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고도화 · 인권교육 강화 · 인권정책선언의 대내외 확산
2.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징구 · 협력사 인권리스크 평가 · 협력사의 인권경영 지원
3. 공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추진 절차 및 체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계 강화 · 인권영향평가 결과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 대응 계획 수립
4. 인권센터 운영 및 환류	· 인권센터 구제처리 절차 ·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5. 인권경영 성과 공시 및 환류	· 인권경영의 성과 공시 · 인권경영 추진 평가 및 환류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집중모니터링 주간 운영

○ 추진 배경 : 직장 내 괴롭힘의 효과적인 예방과 반괴롭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추진 내용

1) 전직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21.5.) : 직장 내 괴롭힘을 유발하는 조직적 요인을 도출하고, 실태조사 결과 취약점을 중심으로 2022년도 반괴롭힘 정책 수립

2) 직장 내 괴롭힘 집중모니터링 주간 운영(‘21.10.) : 실태조사 결과 특별히 취약한 그룹을 대상으로 2주간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해, 괴롭힘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SH인권센터 등 신고절차 안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경각심 조성

□ 인권보호·존중 문화의 공유·확산·내재화를 위한 인권토크 콘서트 개최

○ 주제: “직장 내 혐오표현과 차별”

(부제: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해치는 칼이 되지 않도록’)

○ 일시 및 장소: 2021. 7. 6.(화) 14:00 ~ 15:30, 청신호 명동 2층 윗집

○ 행사방식 :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공사 유튜브 채널 ‘청신호 TV’)

○ 출연

- 강의 패널: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저서 ‘말이 칼이 될 때’)
- 패널: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 진행: 변영주 (영화감독)

○ 행사 결과 : 임직원 708명 참여(온라인 시청 690명, 현장 방청 18명)

○ 공유·확산 : 서울시, 서울시투자출연기관, 광역도시개발 공사 등에 영상 공유

○ 행사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 토크콘서트 온라인 생중계 화면〕

□ 대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2022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10대 ‘리드회원’으로 선정**

- UNGC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10대 핵심가치 확산 기여

〔보도자료〕

〔위촉증서〕

○ 2021년도 참여형 인권경영 토론회 개최

- 공사 인권경영 추진과정에 공급망(협력사, 입주민)의 참여로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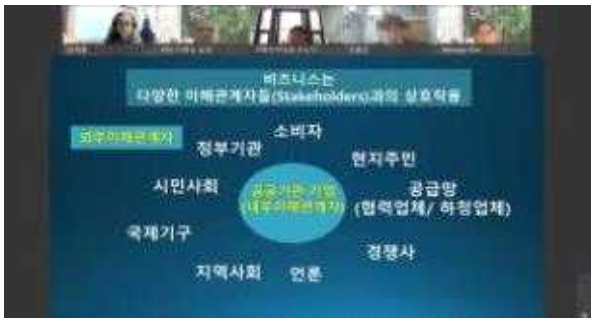

〔강의 진행 화면〕

〔토론 진행 화면〕

○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에서 공사사례 발표

- '구제' 세션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통합적 구제체계' 발제(2021. 12. 03)

〔발제 진행 화면〕

〔기념사진〕

□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을 위한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공급망 내 협력사와의 거래 및 사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논란이 사회적 책임의 핵심요소로 등장

○ 추진 내용

- **협력사 행동 규범 수립** : 협력사의 근로자 인권존중, 안전과 보건, 환경 보호, 기업윤리, 경영체계를 기준으로 협력사 행동규범 개발
- 협력사 인권평가체계 구축 : 협력사 인권리스크 프로세스 구축 및 지표 확정
- 협력사 인권평가 실시 : 협력사 내 인권 침해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협력사 대상으로 비대면 평가로 진행

□ 인권경영 공개

공개 위치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개 > 인권경영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개 > 공사소식 > 유엔글로벌콤팩트
공개 내용	- 인권경영 목표 및 선언문, 전담조직, 추진체계 - SH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인권영향평가 결과 -SH인권센터(인권침해신고·상담) 안내	- UNGC 10대 원칙 - 10대 원칙 이행보고서

Ⅱ SH인권센터(인권침해구제기구) 운영

1. 설치목적

□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인권침해)에 의한 피해를 구제

2. 추진경위

□ (2019. 3. 25.) 사장 지시사항 제32호

'인권센터를 만들고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

□ (2019. 12. 31.) SH 인권센터 설치(안) 방침 수립

□ (2020. 5. 15.) SH인권센터장 위촉

□ (2020. 6. 10.) SH인권센터 설치안 변경 및 운영방안 수립

□ (2020. 7. 1.) SH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0. 7. 29.) SH인권센터 개소

□ (2021. 6. 22.) SH인권센터 운영 평가 환류회의

3. 운영체계

□ 담당업무

○ 공사의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사안, 그 외 공사의 통제 범위 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안의 신고접수·조사 및 구제조치 결정 (※ 협력사, 입주민 등 외부 이해관계인도 신고 가능)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심리상담 등 지원

○ 그 밖에 센터장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 운영원칙

○ **(신뢰성)** 신고 접수, 상담,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 전반에서 익명성 보장

○ **(전문성)** 인권전문가와 외부전문기관에서 상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 인권 전문가가 과반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사건 심의·의결

○ **(통합성)** 사건처리 과정 전반(신고접수·조사·결정)을 통합하여 공사 내부 이해관계 개입의 가능성 최소화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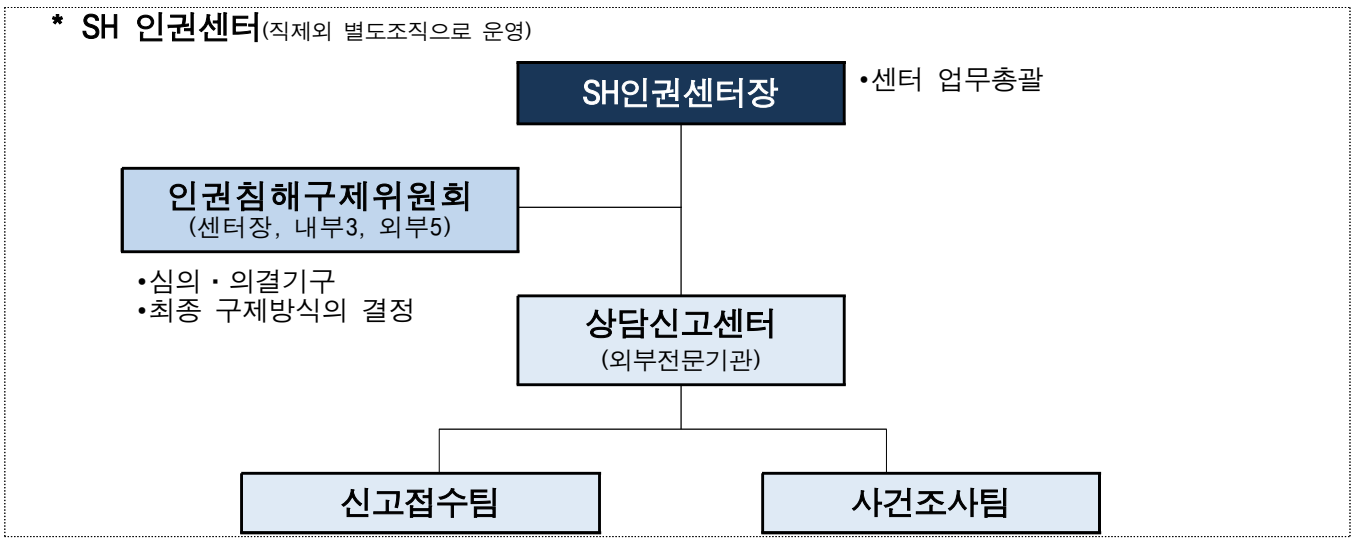

4.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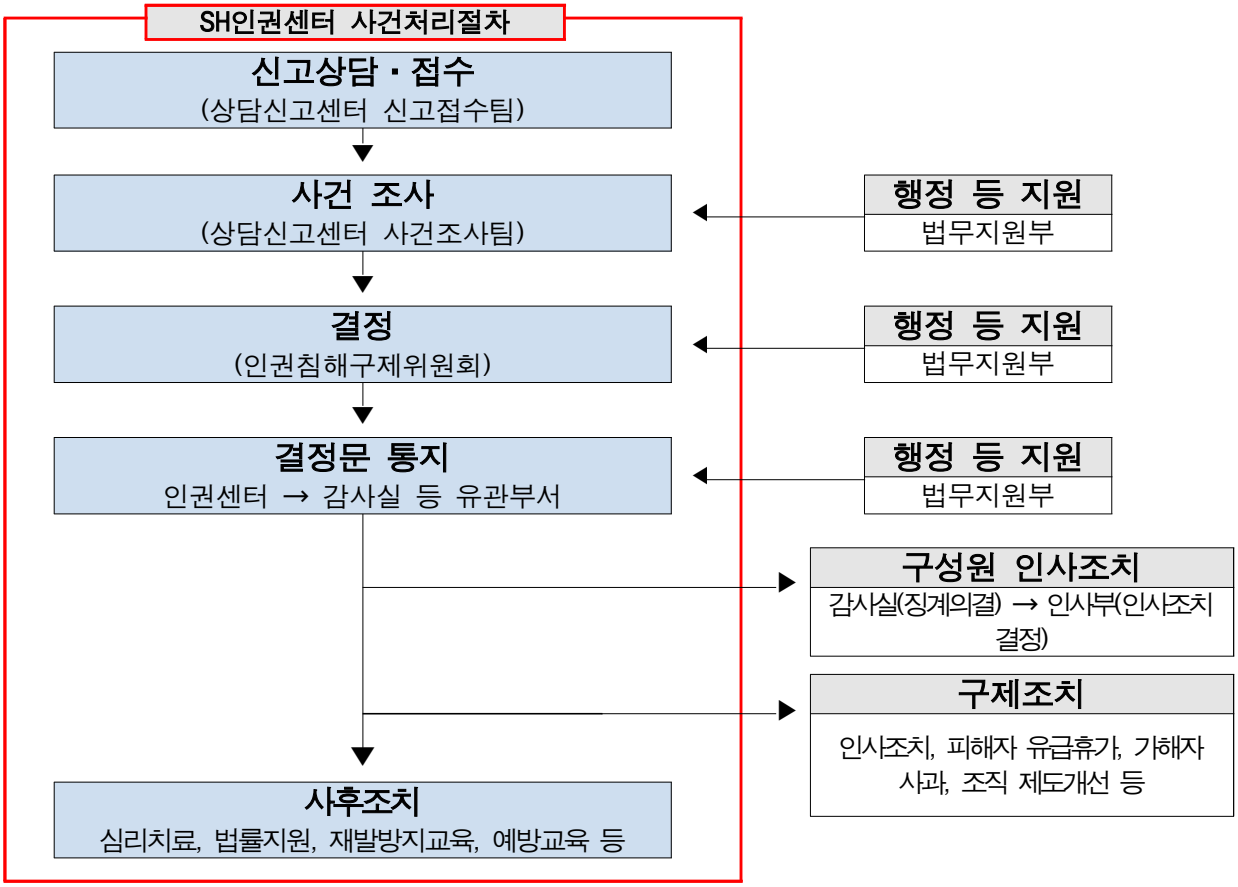

5. 처리현황

□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신고접수 건은 총 17건이며, 처리 완료한 건은 14건임.

(기간: 2020. 7. 29. ~ 2021. 12. 31.)

연도	사건유형	건수	처리결과
2020	직장내 괴롭힘	2	기각(2)
	성비위	2	각하(1), 인사조치(1)
	공사 이해관계자 관련	2	각하(2)
	공사 업무처리 관련	-	-
2021	직장내 괴롭힘	3	인사조치(1), 조사중(2)
	성비위	1	각하(1)
	공사 이해관계자 관련	4	기각(2), 각하(1), 조사중(1)
	공사 업무처리 관련	3	기각(1), 각하(2)

Ⅲ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추진목적

□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단·방지조치를 수립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함

2. 평가기간 및 절차

□ 추진기간 : 2021. 9. ~ 2021. 12. (4개월)

□ 추진절차

3. 평가범위 및 기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사 조직 및 직무와 이해관계자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지표로 수정·보완('20년 대비 7개 지표 수정, 2개 지표 제외)

○ 세부평가지표

이슈			주요 내용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2	-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제도화, 조직 및 프로그램 등 - (분야)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 조치, 인권경영 성과보고 및 공개,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18	- 임직원과 자회사 및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소속과 국적에 관계 없이 차별 없는 노동 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분야) 고용상의 비차별,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협력사 등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항목 - (분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관련 사항
4	강제노동·부당한 초과 노동의 금지	11	- 임직원과 자회사 및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비자발적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 및 현황 점검과 강제노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 (분야) 강제노동 및 부당한 초과 노동의 금지, 자회사 및 협력회사의 강제노동 예방
5	산업안전 보장	17	- 모든 현장근로자(자회사/협력사 포함)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법적사항 준수, 현장 관리/감독, 안전교육/훈련 제공, 필수장비 제공, 피해근로자 지원체계 등 - (분야)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직무 관련 필수장비 제공 및 안전/위생 교육,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이슈			주요 내용
6	근로자의 건강권 등 보호	18	- 감정노동 종사자(콜센터 등) 보호체계 및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과 구제절차, 부패방지 조항,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노력 - (분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정신건강, 성폭력 예방, 부패방지, 휴식권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 자회사 및 협력사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화(인권보호 서약, 인권존중 요구, 거래중단 요구), 모니터링(감시, 설문)등 - (분야) 협력회사 근로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구축, 인권 모니터링 실시
8	지역의 인권 보호	7	- 토지 소유주 권리 보장, 지역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재산권/주거권보장 노력, 지역주민 대상 적법한 보상 대책 마련 등 - (분야) 지역주민의 권리, 인권존중 및 보호
9	환경권 보장	15	- 사업 대상지 환경훼손 예방, 환경영향 점검 및 대책 수립, 환경침해 방지는 위한 교육, 환경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 (분야)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조치 및 노력,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인권 보호	15	- SH공사 주택 등의 결함과 이슈 발생에 대비,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 등 -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하자/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계		154	10개 이슈 154개 체크리스트 지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SH공사 주요사업 인권 영향 분석을 위해 사업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 영향도,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인권영향 체크리스트 개발 및 평가 시행

○ 2021년에는 ‘임대주택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 세부평가지표

분야	이슈		주요 내용
입주 및 퇴거 관리, 기타 행정	정보 접근성 강화	3	정보 접근성 보장, 행정과 민원 안내 강화, 규정에 따른 정보의 성실한 제공
	행정 전문화/ 코로나19 대응	2	행정 전산화/자동화, 위생대책 지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3	정보보안 규정, 보안관리,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공급망 관리	1	위탁용역 부정부패 발생 관리
운영 및 관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6	임대주택 운영 효율화, 서비스 수준 제고 지도 및 평가, 불법 전매 및 전대 발생 방지, 센터 및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 등
	영업시설 관리	2	운영 이슈, 시설 모니터링 등
	시설물 이용 안전 강화	7	시설물 안전, 위생, 안전점검, 모니터링, 장애인 및 노약자 고려 시설 개선, 비상상황 대응 등
	주택 환경 및 시설물 관리	2	부대시설 및 공용 시설 환경 관리,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체계	입주자 권리 보장	8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만족도 조사 및 민원을 통한 개선, 임차인의 의무 고지, 민원 대응 체계 등
	임대주택관리노동자 권리 보장	5	악성민원 대응, 위탁업체와 공정한 계약, 임대주택관리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근로 환경 개선, 의견 수렴 등
	인권보호 체계 구축	8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인권침해 발생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직원 인권침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직문화 개선 모니터링, 구제제도 제공 및 지원 등
계		47	11개 이슈 47개 체크리스트 지표

4. 평가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통계) 154개 지표 중 '예' 146개, '보완필요' 7개, '아니오' 0개, '정보없음' 1개, '해당없음' 0개
- (종합점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점 평균은 97.0점

⇒ '20년 대비 4.4점 상승

이슈	분야 수	지표 수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평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32	30	2	0	0	0	97.1
고용상의 비차별	4	18	17	0	0	1	0	100.0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14	14	0	0	0	0	100.0
강제노동·부당한 초과 노동의 금지	2	11	11	0	0	0	0	100.0
산업안전 보장	4	17	17	0	0	0	0	100.0
근로자의 건강권 등 보호	4	18	17	1	0	0	0	98.4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7	4	3	0	0	0	77.5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1	7	7	0	0	0	0	100.0
환경권 보장	4	15	14	1	0	0	0	96.9
소비자인권 보호	3	15	15	0	0	0	0	100.0
합계/평균	**32**	**154**	**146**	**7**	**0**	**1**	**0**	**97.0**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통계) 47개 지표 중 '예' 42개, '보완필요' 5개, '아니오' 0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0개
- (종합점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점 평균은 94.7점

사업	분야	지표 수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평균
임대주택관리 사업	입주 및 퇴거 관리, 기타 행정	9	9	0	0	0	0	100.0
	운영 및 관리	17	14	3	0	0	0	91.2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체계	21	19	2	0	0	0	95.2
합계/평균		**47**	**42**	**5**	**0**	**0**	**0**	**94.7**

□ 주요 인권리스크 및 개선방안

* 단기 (2022년), 중기(2023년 ~ 2024년), 장기(2025년)

분야	연번	구분	단계	인권리스크 및 개선방안	담당부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	신규 ('22)	중기	**(인권경영 교육 콘텐츠 마련)** 공사 인권경영 추진, 인권감수성, 협력사 행동규범, 인권 구제제도, 감정노동자 보호, 임대주택관리노동자,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사례중심 인권보호 등의 내용으로 인권경영 교육 콘텐츠 개발 → 담당부서 및 각 사업부서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콘텐츠 배포 · 확산 **(인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인권보호 홍보물 제작 및 전 센터 비치와 캠페인 동시 실시	사회적가치부, 인재개발원, 총무부 각 사업부서
구제절차 마련	2	계속 ('21)	단기	**(인권침해 구제 조사 결과 통보 기한 명시)**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0조 개선	법무지원부
고용상 비차별	3	계속 ('21)	중기	**(직군별 복지후생 관련 규정 보완)** 통일성 확보 및 실제 제공되고 있으나 규정 내 명시되지 않은 항목 명시	노사협력부
강제노동 부당한 초과 노동의 금지	4	계속 ('21)	중장기	**(협력사로 인권경영 범위 확대)** -중장기 전략추진 방향인 공급망 내 인권 가치 창출을 위한 공급망의 인권경영 확산, 사업운영 내 인권리스크 최소화, 공급망 인권경영 이행 도모	사회적가치부
괴롭힘 방지 · 정신 건강	5	신규 ('22)	단기 장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① 공사 방문 고객 대상 감정노동자 보호 배너 제작 및 설치 **(단기)** ② 감정노동자 보호 개선계획 수립 **(장기)**	총무부
	6	계속 ('21)	단기	**(감사규정 개선)** ① 감사규정 내 강압적인 요구,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음을 명시, ② 감사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함을 명시	행정감사부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7	신규 ('22)	중기	**(협력사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 및 지원정책 마련)** ①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 리스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유 및 교육 ② 인권의식 확산,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등 지원정책 마련	사회적가치부, 계약부, 견적발주부
비상계획 수립	8	신규 ('22)	단기	**(이해관계자 포함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시 공사장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 현지주민 대피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총무부
영업시설 관리	9	신규 ('22)	단기	**(임대주택 영업시설 시설물 관리체계 운영)** 임대아파트 장기수선 공사 시행 시 단지 내 상가도 포함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영업시설 시설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센터

분야	연번	구분	단계	인권리스크 및 개선방안	담당부서
시설물 이용 안전 강화	10	신규	단기	(임대주택 시설물 이용 안전점검 강화) ① 임대주택관리 노동자에 의해 상시로 소방, 전기,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대장 등 문서 수신을 통한 정기적인 센터 관리를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지원 ②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입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센터
	11	신규	단기	(임대주택 유지보수 직무 수행 시 안전 강화) 관리사무소별 근로조건 및 체계 등의 차별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공사 차원의 교육, 장비 제공 및 필수착용 권고와 점검 등 관리 강화	센터

[붙임1]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요약본)

2021. 12.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 ㈜이에스지파트너스)

목 차

Ⅰ.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 21

1. 인권영향평가 정의 및 목적 ····· 21

2. 인권영향평가 수행 프로세스 ····· 22

3. 평가 시행 개요 ····· 22

Ⅱ. 인권영향평가 지표 고도화 ····· 24

1. 인권영향평가 지표 고도화 프로세스 ····· 24

2.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지표 개선 ····· 24

3.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지표 개발 ····· 28

Ⅲ. 평가결과 및 제언 ····· 30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30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35

Ⅰ.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1. 인권영향평가 정의 및 목적

○ (정의) 인권영향평가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인권영향에 대한 평가를 체계화한 절차로, 이해관계자 인권의 부정적인 영향을 구조적으로 식별하는 절차이며, 개선과 환류를 포함하고 있음

-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인권 영향 대응을 위한 상당주의의무 이행으로서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식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

○ (목적) 이해관계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영향을 조사하거나 예측 또는 평가하여 부정적이고 해로운 인권 영향, 즉 인권침해의 회피, 제거, 감소에 그 목적이 있음

○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14년부터 공공기관 대상 인권경영 도입 권고, ’18년 매뉴얼 배포를 통해 적극적 확산 추진 중이며,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

2. 인권영향평가 수행 프로세스

○ (프로세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 및 사업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결과분석 및 개선과제 이행점검을 통한 환류까지의 과정으로 진행됨

[그림 10]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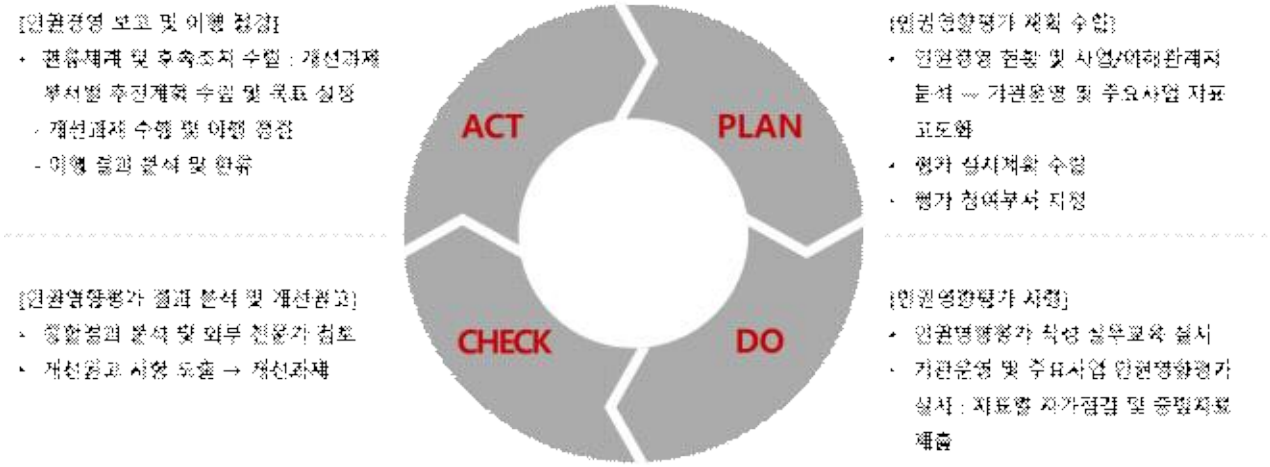

-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에서부터 평가 종료 및 보고까지 인권경영 담당부서 중심 참여부서의 자가점검이 수행되며, 평가를 위해 근거자료 제출 등이 수반됨

3. 평가 시행 개요

○ (평가대상) 기관운영 인권 분야 및 주요사업의 담당부서

- **기관운영** : 사회적가치부, 인사부, 법무지원부, 노사협력부, 해외사업단, 견적발주부, 총무부, 재난안전실, 행정감사부, 청렴윤리부, 계약부, 보상총괄부, 도시환경부, 건축기술부, 분양수납부, 공공주택부, 택지판매부, 하자기획부, 정보시스템부, 지역별 13개 센터

- **주요사업** : 임대주택 센터, 시설관리부, 주택관리부, 총무부, 사회적가치부, 청렴윤리부, 노사협력부, 법무지원부

○ (평가 방법) 지표별 담당부서에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를 자가점검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자가점검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점수 부여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의 점검항목(지표) 대상 담당부서의 자가진단 후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근거자료 및 향후 계획 등을 기반으로 지표 평가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평가 결과 심의

○ (평가 기준)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평가

○ (워크숍)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부서별 담당자 대상으로 인권경영 동향 등에 대한 교육과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교육 및 자료 제공

- 기관운영 워크숍 실시 : 2021. 11. 16. SH공사 회의실

- 주요사업 워크숍 실시 : 2021. 11. 17. SH공사 구로금천센터 회의실

Ⅱ. 인권영향평가 지표 고도화

1. 인권영향평가 지표 고도화 프로세스

○ 대내외 인권경영 관련 정책 및 기준과 제도 등 환경 변화, 이해관계자 요구와 발생 가능한 잠재적 인권 이슈 대응을 위해 사전 예방적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기관운영 지표를 개선하고 주요사업 지표를 개발함

[그림 11]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선 및 개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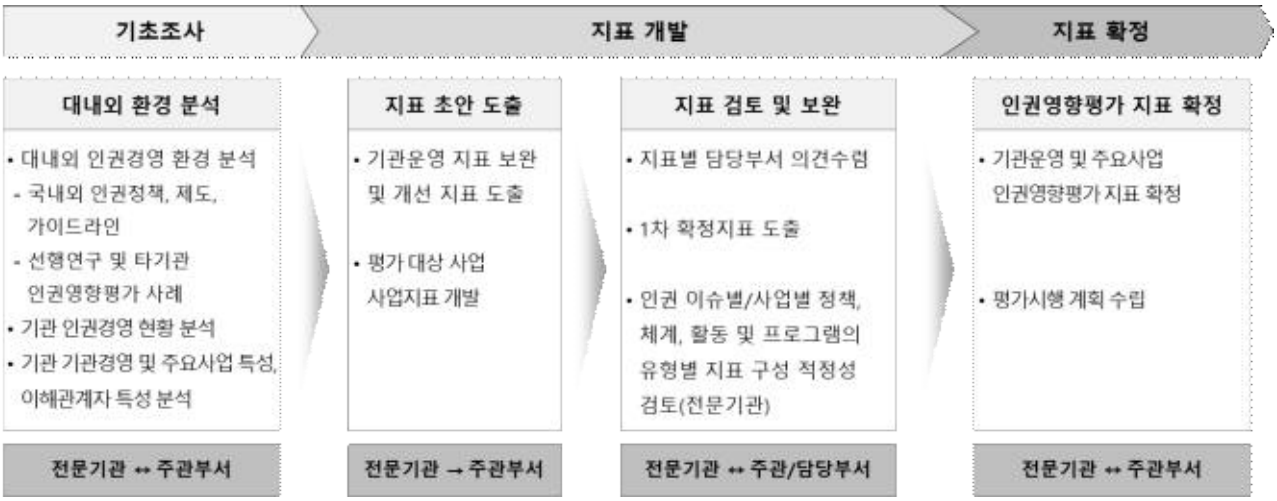

2.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지표 개선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의 지표를 기반으로 공사 조직 및 직무와 이해관계자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지표로 수정·보완 등의 절차로 개선됨

-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미비 및 근거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지표 등을 현실적인 대안 지표로 수정

[표 34]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지표 개선사항

이슈 구분	지표 수			비고		
	2020년	2021년	증감	신규	수정	제외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2	32	-	-	1	-
고용상의 비차별	18	18	-	-	1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4	-	-	-	-
강제노동·부당한 초과 노동의 금지	11	11	-	-	3	-
산업안전 보장	17	17	-	-	-	-
근로자의 건강권 등 보호	18	18	-	-	-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7	-	-	2	-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7	7	-	-		-
환경권 보장	17	15	-2	-	-	2
소비자인권 보호	15	15	-	-	-	-
합계	156	154	-	-	7	2

[표 35]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평가범위

이슈			주요 내용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2	-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제도화, 조직 및 프로그램 등 - (분야)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 조치, 인권경영 성과보고 및 공개,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18	- 임직원과 자회사 및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소속과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노동 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 - (분야) 고용상의 비차별,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협력사 등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항목 - (분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관련 사항
4	강제노동・부당한 초과 노동의 금지	11	- 임직원과 자회사 및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비자발적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 및 현황 점검과 강제노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 (분야) 강제노동 및 부당한 초과 노동의 금지, 자회사 및 협력회사의 강제노동 예방
5	산업안전 보장	17	- 모든 현장근로자(자회사/협력사 포함)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법적사항 준수, 현장 관리/감독, 안전교육/훈련 제공, 필수장비 제공, 피해근로자 지원체계 등 - (분야)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직무 관련 필수장비 제공 및 안전/위생 교육,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6	근로자의 건강권 등 보호	18	- 감정노동 종사자(콜센터 등) 보호체계 및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과 구제절차, 부패방지 조항,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노력 - (분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정신건강, 성폭력 예방, 부패방지, 휴식권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 자회사 및 협력사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화(인권보호 서약, 인권존중 요구, 거래중단 요구), 모니터링(감시, 설문) 등 - (분야) 협력회사 근로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구축, 인권 모니터링 실시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7	- 토지 소유주 권리 보장, 지역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재산권/주거권보장 노력, 지역주민 대상 적법한 보상 대책 마련 등 - (분야) 지역주민의 권리, 인권존중 및 보호

이슈			주요 내용
9	환경권 보장	15	- 사업 대상지 환경훼손 예방, 환경영향 점검 및 대책 수립, 환경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환경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 (분야)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조치 및 노력,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인권 보호	15	- SH공사 주택 등의 결함과 이슈 발생에 대비,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 등 -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하자/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계		154	10개 이슈 154개 체크리스트 지표

3.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지표 개발

[그림 1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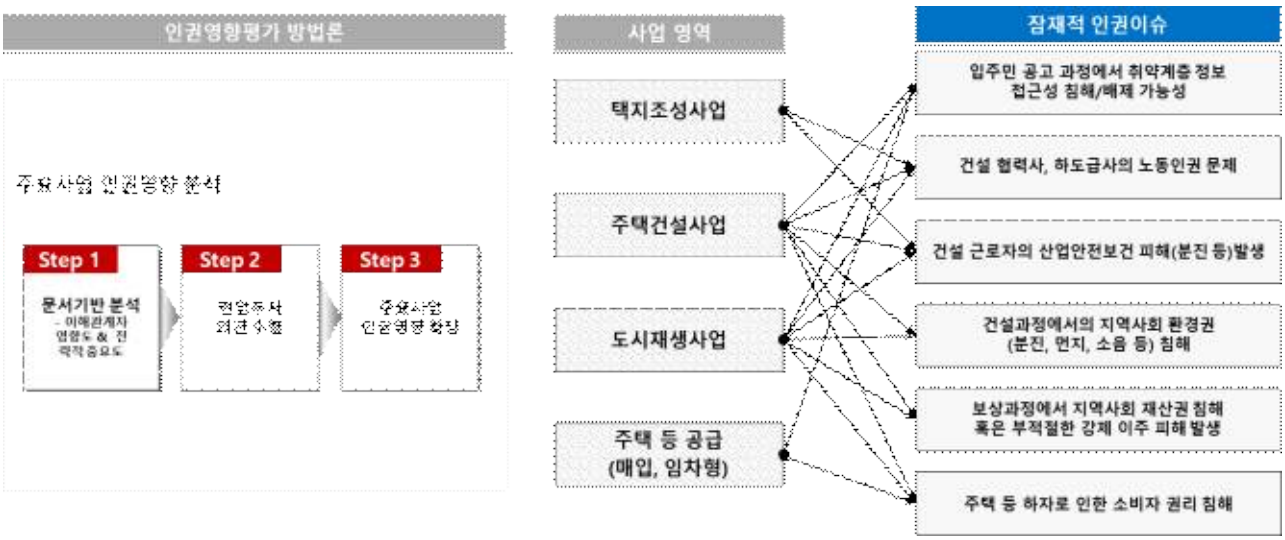

○ SH공사 주요사업 인권 영향 분석을 위한 사업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 영향도,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인권영향 체크리스트 개발 및 평가 시행

○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을 '19년에 1차 주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20년에는 도시재생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함

○ '21년에는 3순위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체크리스트 개발

○ 3차 주요사업 대상 사업인 주택관리사업의 사업 관련 문헌조사 등을 수행하고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잠재 인권 리스크를 수집하여 사업의 비즈니스 체인 특성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별 주요한 인권을 분석함

○ 문헌 조사, 인터뷰 등으로 식별된 잠재 인권 리스크를 바탕으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의 초안을 개발하여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를 구성

- 사업 및 이해관계자 특성에 따라 인권 분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분야별 다수의 지표를 구성

[표 36] 임대주택관리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범위

분야	이슈		주요 내용
입주 및 퇴거 관리, 기타 행정	정보 접근성 강화	3	정보 접근성 보장, 행정과 민원 안내 강화, 규정에 따른 정보의 성실한 제공
	행정 전문화/ 코로나19 대응	2	행정 전산화/자동화, 위생대책 지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3	정보보안 규정, 보안관리,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공급망 관리	1	위탁용역 부정부패 발생 관리
운영 및 관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6	임대주택 운영 효율화, 서비스 수준 제고 지도 및 평가, 불법 전매 및 전대 발생 방지, 센터 및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 등
	영업시설 관리	2	운영 이슈, 시설 모니터링 등
	시설물 이용 안전 강화	7	시설물 안전, 위생, 안전점검, 모니터링, 장애인 및 노약자 고려 시설 개선, 비상상황 대응 등
	주택 환경 및 시설물 관리	2	부대시설 및 공용 시설 환경 관리,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체계	입주자 권리 보장	8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만족도 조사 및 민원을 통한 개선, 임차인의 의무 고지, 민원 대응 체계 등
	임대주택관리 노동자 권리 보장	5	악성민원 대응, 위탁업체와 공정한 계약, 임대주택관리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근로 환경 개선, 의견 수렴 등
	인권보호 체계 구축	8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인권침해 발생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직원 인권침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직문화 개선 모니터링, 구제제도 제공 및 지원 등
계		47	11개 이슈 47개 체크리스트 지표

Ⅲ. 평가결과 및 제언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결과

◇ (종합통계) 예 146개(94.8%), 보완필요 7개(4.5%),
아니오 0개, 정보없음 1개(0.6%), 해당없음 0개

◇ (종합점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점 평균은 97.0점

[그림 13]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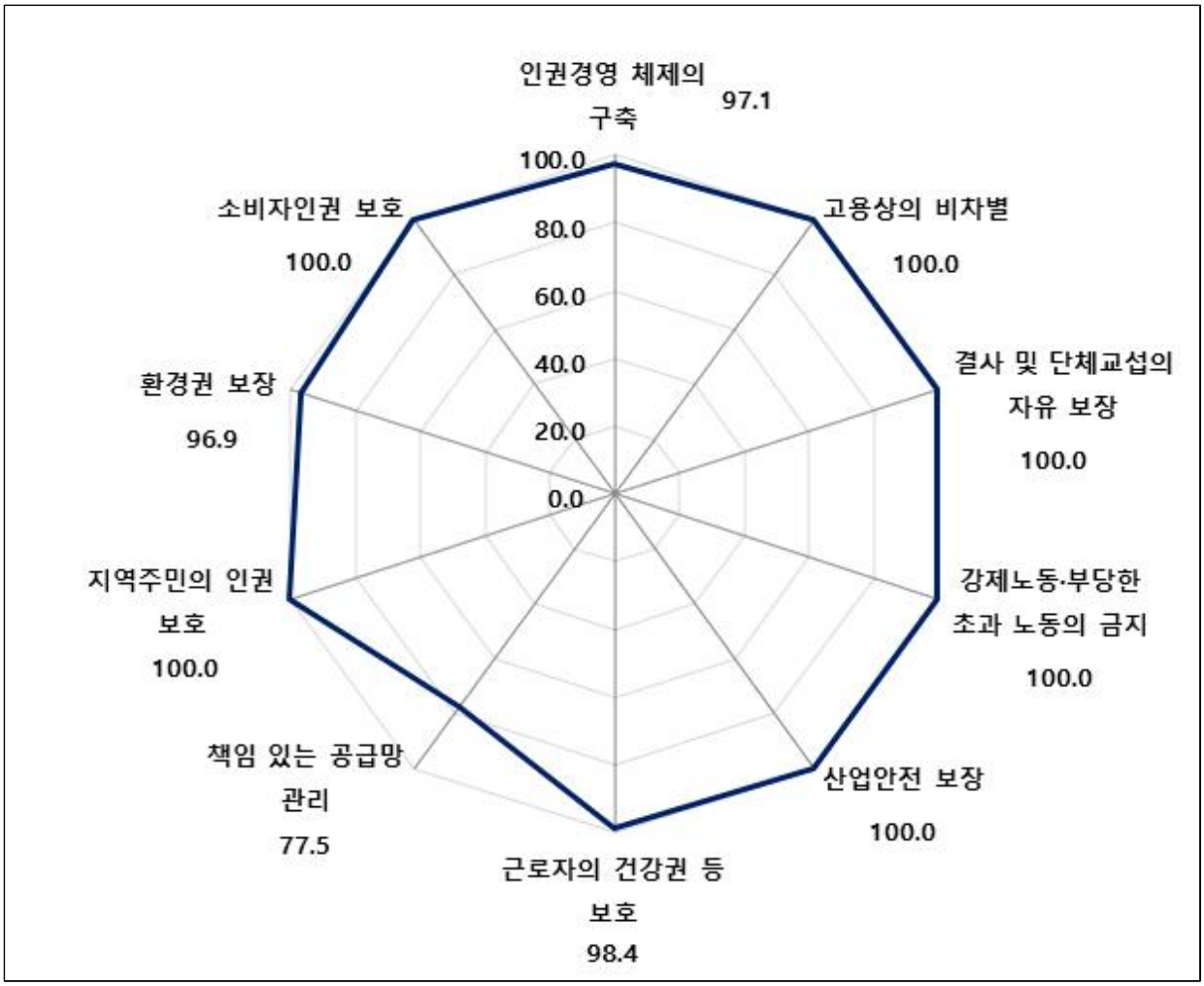

○ 공사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과 관련한 부정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인권경영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기관 및 사업추진 전반에 있어 이해관계자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추진

체계 진단, 내부규정 및 관련 제도 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 반영 여부 등을 파악함

○ 공사 '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10개 이슈, 154개 지표를 평가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체 인권 이슈의 평점 평균은 97.0점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대내외 인권경영 확산 및 이해관계자 인권증진,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전년 대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이슈별로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 및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근로자 건강권 관리, 환경권 등에서 보완요소가 파악되었음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54개 지표 중 '예' 146개, '보완필요' 7개, '아니오' 0개, '정보없음' 1개, '해당없음' 0개로 도출되었음

[표 37]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총괄표

이슈	분야 수	지표 수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평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32	30	2	0	0	0	97.1
고용상의 비차별	4	18	17	0	0	1	0	100.0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14	14	0	0	0	0	100.0
강제노동·부당한 초과 노동의 금지	2	11	11	0	0	0	0	100.0
산업안전 보장	4	17	17	0	0	0	0	100.0
근로자의 건강권 등 보호	4	18	17	1	0	0	0	98.4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7	4	3	0	0	0	77.5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1	7	7	0	0	0	0	100.0
환경권 보장	4	15	14	1	0	0	0	96.9
소비자인권 보호	3	15	15	0	0	0	0	100.0
합계/평균	**32**	**154**	**146**	**7**	**0**	**1**	**0**	**97.0**

□ 주요 이행실적

○ 공사는 인권 이슈 전반의 개선과 인권경영 확산,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인권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관리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권 보장 체계 개선, 소비자인권 보호 활동 강화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음

-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경영 성과,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단계에서 외부자문회의를 통한 인권정책선언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짐(이후 인권경영 토론회를 통한 재검토 실시)

-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경영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사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인권경영 교육을 제공함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SH인권센터를 운영하여 공사 사업 중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그 즉시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또한, 공급망 인권경영 지원을 위하여 콜센터, 임대주택관리업체, 시공사,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협력사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특성상 서면평가가 일차적 기준인 인권영향평가에서 직원을 위한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요소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권·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규정은 관련 법령 및 상위 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주요 개선권고 및 제언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모든 분야의 개선과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으나 인권영향평가는 현재 리스크와 이슈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지표 보완, 경영 및 사업 운영에서 이해관계자 리스크 수집 및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과 이행이 요구됨

<보완 필요>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공급망 인권경영 지원 활동 강화 필요성이 파악됨
  - (인권증진 활동 강화) 인권증진 콘텐츠(리플렛, 온라인 홍보자료, 인권레터, 인권이해 도서 보급 등) 제작 및 확산, 인권 인식도 향상을 위한 이벤트(‘인권영향 감상평 이벤트’, ‘인권퀴즈 대회’ 등),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자가진단(‘인권 자가점검표 운영’, ‘인권 감수성 교육’ 등) 실시 등
- (근로자의 건강권 등 보호) 공사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상호 인권보호를 위한 배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공사 사옥뿐만 아니라 각 센터와 현장에도 공유되도록 추진이 필요함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 강화, 협력사 인권경영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인권증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자체적인 인권경영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인권경영 지원, 인권인식 확산을 위한 공사 인권경영 추진현황 공유, 인권경영 교육 콘텐츠 제공,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배포 및 자체 실시 권고, 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지속 안내 등
  -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함
- (환경권 보장) 현재 비상사태 시 대피, 대응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 사업 현장 등에서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시 현지주민

대피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정보 없음>

- (고용상의 비차별) 현재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없어 규정, 추진 활동 등이 부재한 관계로 평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해외사업 추진 등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는 유지함

<고려 요소>

- 인권경영 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권경영의 현장 적용 실효성 파악, 구제제도 운영에 따른 평가와 개선은 향후 과제로 고려가 필요함

  · (실효성 점검)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이슈로 인해 기관의 평판,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실태조사 등을 확대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근로권, 건강권, 산업안전 보장을 위해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제도, 활동 등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함

  · (구제제도 평가 및 개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구제제도, 민원처리 등에 대한 시스템 접근성, 이용 용이성, 신뢰도, 만족도 등을 조사 및 개선하는 절차가 요구됨

    * 2022년(2021년 성과 기준)부터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지표 내 연 1회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차기년도 사업계획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결과

◇ (종합통계) 예 42개(89.4%), 보완필요 5개(10.6%),
아니오 0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0개

◇ (종합점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점 평균은 94.7점

[그림 14]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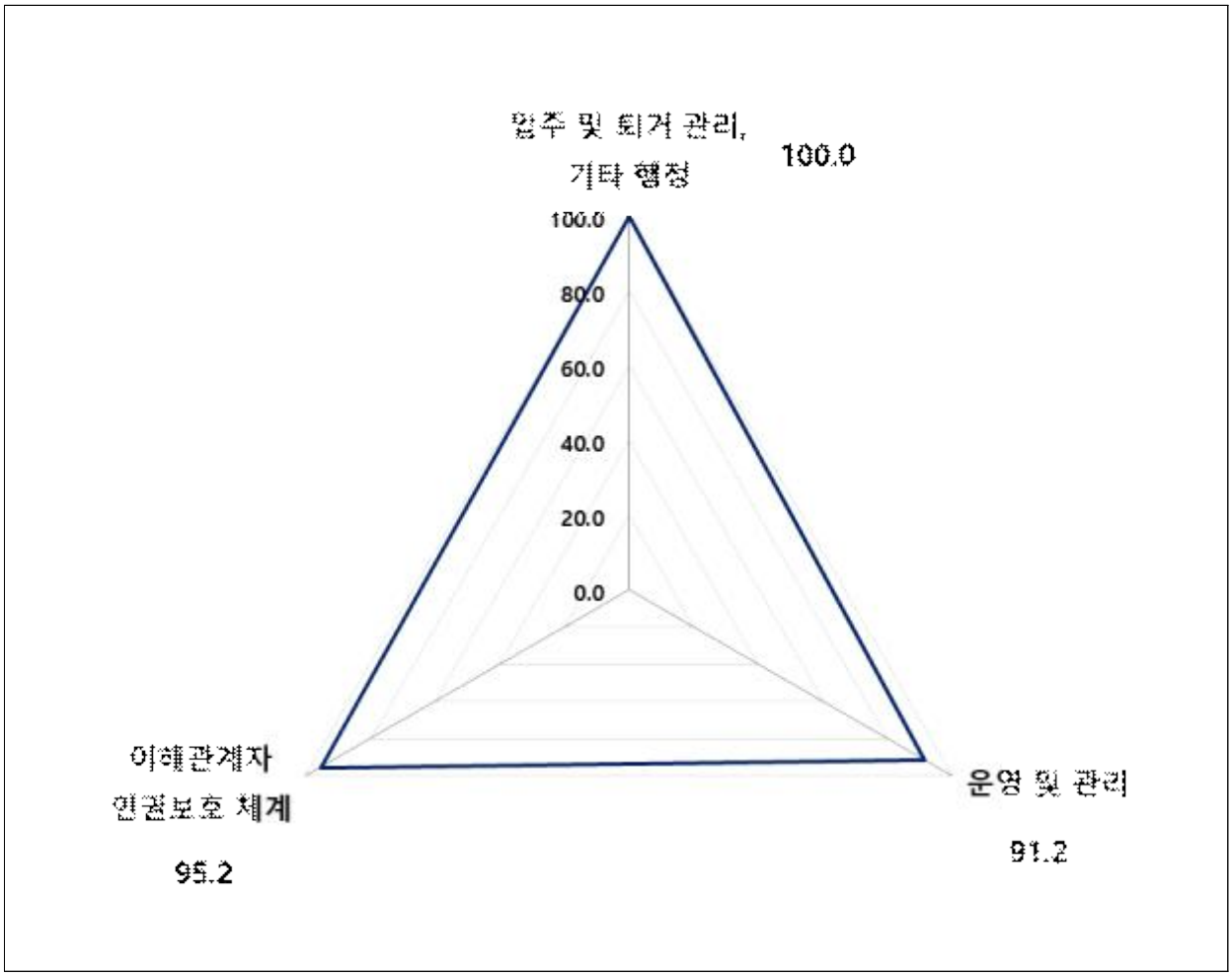

○ 공사는 '19년부터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1년에는 임대주택관리사업을 선정하여 총 47개의 신규 지표를 개발함

○ '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균 점수는 94.7점으로 각 사업부서, 센터, 임대주택현장 등에서 상호 간의 인권침해

예방과 입주민과 임대주택관리 노동자 인격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인권 리스크 관리 및 개선 노력을 이행하고 있음

- 임대주택 시설물 이용 안전을 위한 점검 및 관리 강화,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등 일부 보완요소가 파악되었음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47개 지표 중 '예' 42개, '보완필요' 5개, '아니오' 0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0개로 도출되었음

[표 38]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괄표

사업	분야	지표 수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평균
임대주택관리 사업	입주 및 퇴거 관리, 기타 행정	9	9	0	0	0	0	100.0
	운영 및 관리	17	14	3	0	0	0	91.2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체계	21	19	2	0	0	0	95.2
합계/평균		47	42	5	0	0	0	94.7

□ 주요 이행실적

○ 공사는 임대주택관리 사업 운영에 있어 입주주택 입주관리 종합계획, 임대주택업무 매뉴얼 등 마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입주민에게 정확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물리적 환경, 온·오프라인 지원 등 개선 노력을 이행하고 있음

- 매년 입주주택 입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센터에 공유하고 있으며,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직무교육,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입주민 대상 주택관리 만족도 조사,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센터 및 관리업체와 공유하고 서비스

수준, 취약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점검 기록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주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임대주택관리 위탁업체 선정은 공사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주택관리 근로자(경비노동자, 기타 관리노동자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공간 운영 상태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있음

- 사업 수행 중 원청사의 갑질, 악성민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 개선 방침', '고객응대매뉴얼'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의 법적 대응 시 공사 법무지원실을 통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 이 외에도 공사는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정적 인권 이슈 및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선과제로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이행하고 있음

- 전 직원 및 간부 집중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발간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파악 및 집중 모니터링 실시
('21년의 경우 주거복지직이 괴롭힘 취약계층으로 파악됨에 따라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 및 개정 여부를 업무점검 항목으로 제도화

□ 주요 개선권고 및 제언

○ 다만, 사업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경영 인식 확산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식 확산 활동이 필요하며,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함

<보완 필요>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 입주민, 센터 직원, 임대주택 관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인권경영 콘텐츠(교육, 리플렛 등) 등을 지속 공유하고, 상호 인권존중 캠페인 등을 활성화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

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각 사업부서/센터별로 인권경영 콘텐츠 확산(공사 인권경영 안내, 인권침해 신고상담센터(SH 인권센터) 안내 및 홍보, 인권교육 및 콘텐츠 제공 등), 인권침해 요소 모니터링(인권 실태조사, 간담회, 소통채널 활용 등) 등을 통한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 입주민과 임대주택관리 노동자(공사 직원, 경비노동자, 기타 관리노동자 등) 간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에티켓, 악성민원 예방 등을 안내하는 캠페인 등의 활성화 필요

- (시설물 이용 안전점검 강화) 소방, 전기, 시설물 등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관리 노동자에 의해 상시로 소방, 전기,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대장 등 문서 수신을 통한 정기적인 센터 관리를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지원하는 등 체계 강화가 필요함

▶ (개선계획) 관리사무소에서 소방, 전기, 시설물 등의 안전검사 후 결과에 대해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엘리베이터,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 진행 예정

- (유지보수 직무수행 시 안전 강화) 현재 보일러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관련 직원 대상 보호장비 제공, 교육은 각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별 근로조건 및 체계 등의 차별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공사 차원의 교육, 장비 제공 및 필수착용 권고와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함

▶ (개선계획) 관리비 항목 중 피복비 등 안전물품 관련 구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진행 예정

- (영업시설 관리) 영업시설 운영 관련 시설 결함 등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물 개보수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있음

· 임대상가의 경우 임대아파트와 같은 수선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시설개선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장기수선 공사 시행 시 단지 내 상가도 포함하여 시설공사는 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붙임2]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라 함은 공사의 모든 경영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1]'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2]'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이행하고,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

---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권경영의 표준화된 국제규범으로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시 이행해야 할 원칙을 제시함

2)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 2000년 UN본부에서 발족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하는 인권, 반부패, 노동, 환경 분야 10대 원칙으로 세계인권선언(1948),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2003)에서 유래함

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지역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공사는 노동자의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학력, 연령, 출신지역,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노동3권 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공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7조(강제노동의 금지) 공사는 협력회사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한다.
② 공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0조(주거권의 보장) 공사는 모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①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② 공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2조(환경권 보장) ①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3조(정보인권 보호) ①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공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4조(기타 인권의 보호) 공사는 이 장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도 경시하지 아니하고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5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표1)*'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사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6조(인권경영담당관)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이행 총괄
2.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교육)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공사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미래전략실장, 인재개발원장, 인사노무처장, 노동이사(1인)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경영 분야 전문가
   나. 협력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 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및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 논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지위상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6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공사는 공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하반기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3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및 처리) 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SH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및 처리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3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사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권경영 선언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급자,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일동